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<b>보도</b>	<b>5.29(화) 중간</b>	배포	2018.5.28.(월)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안 창 국(02-2100-2650)	<b>담 당 자</b>	최 성 규 사무관 (02-2100-2655)	
	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 강 전(02-3145-7010)		김 진 국 부국장 (02-3145-7012)	
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김 동 회(02-3145-7580)		조 철 팀 장 (02-3145-7611)	
	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권 오 현(02-3774-8505)		라 성 채 부 장 (02-3774-8580)	
	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본부장 장 치 중(02-3774-3108)		박 문 규 부 장 (02-3774-3350)	
	한국증권금융 운용본부장 홍 인 기(02-3770-8507)		김 창 식 부 장 (02-3770-8890)	
	코스콤 자본시장본부장 신 재 룡(02-767-8002)		정 기 우 팀 장 (02-767-8395)	
	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오 세 정(02-2003-9014)		이 도 연 이 사 (02-2003-9370)	

## 제 목 :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「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」 마련

- ① (주식 매매제도) 주식 매매 **순 단계별로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** 등을 마련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
  - ❶ 투자자별 매매가능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「**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**」을 구축
  - ❷ 사고 등으로 발생한 매매주문을 한 번의 조치만으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「**비상 버튼 시스템**」 도입 등
- ② (우리사주조합)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의 **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** 시스템을 분리하고 은행전산망 활용 추진
- ③ (공매도 제도) **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확대**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을 **확실히 근절**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
  - ❶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**대여가능주식 확대**
  - ❷ 공매도 규제 위반을 **신속히 적발**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  - ❸ **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** 등을 통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

## 1. 사고개요

- '18.4.6 삼성증권은 당해 회사 **우리사주조합원(2,018명)**에 대한 현금배당을 **주식배당으로 착오 입고\***하는 사고 발생
  - \* (당초) 주당 1천원 배당 → (사고 내용) 주당 1천주, 총 28.1억주 입고
  - **주식을 입고받은 직원 중 22명이 1,208만주를 매도주문**하였고 이 중 **501만주(16명) 계약이 체결**(9:35~10:06, 31분간)
    - \* 삼성증권 주가는 사고 당일 약 △12% 하락(39,800원 → 35,150원)

## 2. 사고 발생 이후 제기된 문제점

- ①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관리 문제
  -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처리 절차가 상이함에도 동일 시스템에서 처리하여 현금배당 과정에서도 주식입고 가능
- ② 착오주식의 입고 및 주문·매매 가능성
  - 배당 처리과정상 실무자의 오류를 증권사 내부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등 증권사 내부통제장치가 미흡
  - 전체 발행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입고되더라도 증권사 자체 시스템에서 검증하지 못하고 입력제한 등도 이루어지지 않음
- ③ 착오주식 관련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미비
  - 착오주식 입고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**매도주문을 신속히 차단**하거나 **즉각 출고**하는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미흡
- ④ 실제 발행이 되지 않은 주식의 주문 체결 가능성
  - 주식 매매시점에 투자자의 **주식 보유잔고를 확인**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거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
  - 삼성증권 직원이 **착오입고된 주식을 매도**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계기로 **공매도 자체를 금지**해야 한다는 의견\*도 제기
    - \*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('18.4.6~5.6) : 총 24.2만명 참여

### 3. 제도개선 방안

- ◆ **주식 잔고·매매 관리와 관련한 엄격한 통제장치** 등을 마련하고 **우리사주조합 배당 체계를 개선**하는 등 **주식 매매제도 전반을 정비**
- ◆ **공매도**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기법으로 **가격발견 기능, 시장 효율성** 등을 감안할 때 **전면 금지**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,
  - 시장 우려 등을 감안하여 **주식 매매제도 개선과정에서 공매도 제도도 점검**하고 **관리·감독을 대폭 강화**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

#### 가. 주식 매매제도의 신뢰성 제고

##### ① 증권사 주식입출고 시스템의 관리 강화

- **(현황)** **주식입출고 관리가 허술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주식**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되어 **매도주문이 체결**되는 등의 사고 발생\* 가능
  - \* (예) ① 증권사 실무부서 착오만으로 주식입고 및 투자자 계좌 반영이 가능
  - ②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 실물입고 시, 예탁결제원의 해당 주식 잔여여부 확인 전에 매도 가능

⇒ **(개선)** **증권사의 주식 입출고에 대한 관계기관 간 확인·승인 절차를 강화**하고, **입출고 한도 설정 및 주기적 점검 의무화**

##### ② 매매주문 전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 검증체계 마련

- **(현황)** **증권사가 개별 투자자에게 주식을 잘못 입고**하는 등 **주식잔고와 관련한 사고**가 발생하더라도 **적시에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**가 발생 가능
- **증권사는 예탁결제원에서 관리 중인 증권사 보유주식 총량**에 대해서만 검증하여 **개별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잔고관리**는 소홀한 측면
  - \* 삼성증권 사고처럼, 예탁결제원 내 증권사의 보유주식 총량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 착오 등으로 **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입고**처리하면 조합원 개별 계좌 내 **주식 잔고가 증가**하는 결과 초래

⇒ **(개선)** **증권사에서 장 개시 전에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여부를 매일 검증**하여 사고 가능성을 확인·시정

- 투자자별 계좌에 **주식이 착오입고**되거나 **주식보유수량을 초과**하는 **매도** 등 사고가능성이 있는 경우 **해당 계좌의 주문을 차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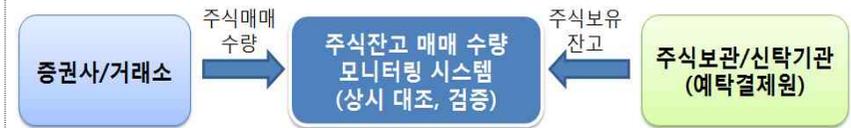


##### ③ 주식보유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
- **(현황)** **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**가 이루어지고 있어 **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이나 착오주식의 확인**이 어려울 가능성

⇒ **(개선)** **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와 매매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「주식잔고·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」** 구축

- 전일 업무마감 이후 **개별 투자자의 주식잔고를 산정**하고 **당일 주식변동 내역을 반영**하여 **상시적으로 주식잔고를 파악**
- 파악한 **주식잔고를 바탕으로 매매수량 등을 대조**하여 **착오 입고·주문 및 공매도 등에 대한 관리·확인**을 강화
- **매매주문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**하는 등 이상 거래시 **주문차단 및 공매도 규제 위반** 등 위법성 조사



※ ②는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, ③은 증권 유관기관 외부통제 시스템

#### ④ 증권사 내부 착오주문 방지체계 개선

- (현황) 증권사의 착오주문 방지 체계\*에도 투자자에게 경고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매가 체결된 경우 확인

\* 주식 매매주문 금액 또는 수량이 과도할 경우, 금투협 규정에 따라 증권사 자체적으로 경고를 안내하거나 매매체결을 보류

⇒ (개선) 투자자별 유형에 맞게 착오주문 방지 기준을 조정

#### ⑤ 사고 발생시 주식매매 즉시 차단 장치 도입

- (현황) 증권사에서 사고 인지 이후 관련 매매를 신속히 차단하지 못해 대규모 매도가 집중되면서 추가급락 등 시장혼란을 야기

⇒ (개선) 사고 발생시 1회의 조치만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차단하는 “비상 버튼 시스템” 도입



#### ⑥ 호가수량 제한 기준 강화

- (현황) 비정상적 대규모 호가로 과도한 시장충격을 방지하고자 1회 호가가 상장주식 수의 5%를 초과할 경우 호가를 거부

- 현행 기준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비정상적 대규모 호가 통제장치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

⇒ (개선) 1회 호가 수량 제한 기준(주식수, 금액)을 현실화

#### ⑦ 금융투자업계 윤리의식 제고

- (현황) 주식이 착오로 입고되었음에도 증권사 일부 직원들의 대규모 매도가 집중되면서 추가급락 등 시장혼란을 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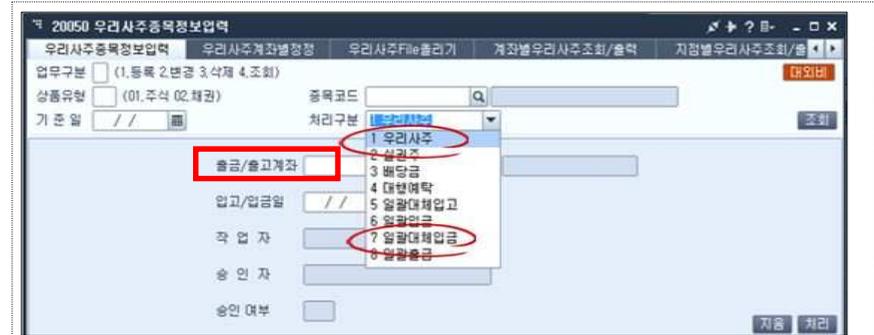
⇒ (개선) 협회 중심으로 업계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윤리 및 준법교육을 강화·내실화

#### 나.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 개선

##### ①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처리시스템을 분리

- (현황)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절차가 상이함에도 동일 시스템에서 처리하여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 처리가 가능

<삼성증권 착오 입력 화면>



→ 현금배당 시 “7.일괄대체입금”을 선택해야 함에도 “1.우리사주”를 선택

⇒ (개선)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 배당 과정 상 주식입고를 원천적으로 차단

- ① 현금배당 담당 인력, 처리 화면 등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 시스템을 주식배당 시스템과 완전 분리
- ②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시 은행전산망\*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하여 주식입고 가능성을 배제

\* 금융결제원 등을 거쳐 현금만 입금할 수 있어 주식입고는 원천 불가

##### ②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프로세스 개선

- (현황)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은 대부분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나, 조합원에 대한 이체 등 일부는 수작업으로 처리

⇒ (개선) 수작업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프로세스의 전산화 등 추진

## 다. 공매도 제도 보완

### ① 공매도는 폐지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

- 공매도는 단기과열종목의 주가급락 등에 따른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전략(헤지거래 등)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운용할 필요

\* 공매도는 미국, 일본, 유럽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도 공매도 제도를 인정

### ②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확대를 통한 공매도 접근성 개선

- (현황) 투자자별로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으나,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이 열악한 개인은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\*이 있다는 지적

\* 기관 간 주식대여(대차)는 대여자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주식을 회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거래 → 신용도, 상환능력 등이 있는 기관 중심으로 거래

- 현재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여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, 대여가능 종목 및 취급 증권사 등이 부족

⇒ (개선)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 종목 및 수량을 확대하고,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를 유도

\* (예) 증권금융 개인대여주식 선정기준 완화 기관 보유주식 활용

### ③ 매매유형별 증권사 확인기능 강화

- (현황) 투자자 주식을 신탁/보관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 증권사에서 공매도 관련 주식 차입여부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 발생 가능

⇒ (개선) 증권사의 자기·위탁매매 주문 집행시 확인의무 강화

- 매도주문을 공매도, 일반, 기타로 구분하여 공매도는 주식차입, 일반은 주식보유, 기타는 타기관 보관 여부 확인을 강화

\* 필요시 준법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

### ④ 공매도 규제 위반 모니터링 강화

- (현황)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

- 특히 거래소의 자료접근권 한계\*, 증권사의 소극적 통보 등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확인 등이 곤란

\* 주식 보유잔고 현황, 대차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나, 증권을 보관·관리하는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징구할 권한이 없음

⇒ (개선) 별도로 구축하는 “잔고·매매 모니터링 시스템”을 활용하여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감시 강화

- 주식보유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 등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공매도 규제 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속히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

### ⑤ 공매도 관련 조사 강화

- (현황) 공매도 규제 위반여부를 확인하려면 주식잔고, 매매시점, 호가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해야 하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조사에 미흡

⇒ (개선) 전담조사반을 두고 “무관용 원칙”에 따라 공매도 및 주문·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

### ⑥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

- (현황)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 과태료(기본 6천만원, 최대 1억원) 부과만으로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

⇒ (개선)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 검토

#### 4. 향후 계획

- '18.3분기부터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단계적 시행 추진
    - 「주식잔고·매매 모니터링 시스템」 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'18.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'19년 상반기 중 시행 추진
  -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위해 '18.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
- ※ [별첨]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pfsc@korea.kr	 별개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